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19
------	------

2025. 4. 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이성배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4.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성배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시설의 방문객 및 이용객을 측정하는데 그 수치가 과다측정되는 등 부정확함. 시설 방문객 및 이용객 수치는 해당 시설의 주요 경영 및 성과평가 자료로 사용되기에 해당 시설들의 방문객 및 이용객 측정을 정확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시설 성과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미술관 관람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분관의 관람객 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설 성과평가를 시행하고자 발의되었음.

이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운영에 있어 시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객을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관리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 개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2) 연간 관람객 및 집계 방법

- 동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시설은 서소문
본관, 북서울미술관, 미술 아카이브 등 총 6개이며, 카메라(CCTV) 센서를
사용하여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있음.

특히 관람객 수는 2024년도 BSC(균형성과관리)¹⁾의 정책성과 항목으로서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미술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통계라 하겠음.

< 연도별 관람객 수 >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625,138	2,096,952	1,918,799
서 소 문 본 관	2,006,400	1,317,233	995,516
북 서 울 미 술 관	397,528	447,608	635,672
미 술 아 카 이 브	-	192,379	88,955
남 서 울 미 술 관	182,502	114,352	173,070
백 남 준 기 념 관	9,973	13,074	16,292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928	-	-
대 외 협 력 전 등	27,807	12,306	9,294

※ 2022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오픈전시 수기 집계 포함

< 시설별 관람객 집계 방법 >

시 설	집 계 방 법
서 소 문 본 관	○ 카메라(CCTV) 센서 집계 - 설치 현황 : 출입구/전시관 17대
북 서 울 미 술 관	○ 카메라(CCTV) 센서 집계 - 설치 현황 : 출입구/전시관 25대
미 술 아 카 이 브	○ 카메라(CCTV) 센서 집계 - 설치 현황 : 출입구 10대
남 서 울 미 술 관	○ 카메라(CCTV) 센서 집계 - 설치 현황 : 출입구 1대
백 남 준 기 념 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안내데스크 직원을 통한 수기 집계
대 외 협 력 전 등	

1) Balanced Score Card(시민, 재정, 내부 과정, 학습과 성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

(3) 개정의 필요성

- 관람객에 대한 통계는 문화전시시설의 가장 기초적인 평가자료로서 예산의 편성과 추진 계획의 수립, 성과지표 달성 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시설 등의 관람객에 대한 측정 기준 및 통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없으나, 관람객 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우리 위원회는 박물관·미술관이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통계의 오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을 요청해왔음.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인의 중복 관람과 박물관·미술관 내부 시설(화장실, 카페 등) 이용자에 대한 구분 없이 관람자 수가 집계된 것이 확인되어, 무인 계수 시스템의 중복 계수 문제가 지적되었음.
-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관람객 수 집계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카메라 무인 계수 방식은 기기 오류로 인한 부정확한 집계 사례²⁾도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다는 논란도 있음.

2) 하재원, “독립기념관, 경영평가 지표인 관람객수 부풀려 ‘비난’”, 중도일보, 2024.12.11.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³⁾ 2010년도부터 지능형 무인 계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수 측정부터 성별·나이까지 추정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계절·전시 기간별 방문 관람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음.

다만, 지능형 무인 계수 시스템에도 인식률 오차에 따른 알고리즘 개선 지적⁴⁾이 있으므로 타 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측정 및 통계 관리를 참고하여 현행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은 동 개정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미술관 관람자 등의 통계 현황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이 요구되는 바이며, 나아가 미술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람 통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할 것을 권고함.

3)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제466호(2010년 6월)

4) 신대성, “지능형 무인계수시스템 설치 후 2년이 지났지만 오차 더 심해져”, 뉴스워커, 2023.10.1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이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람객 계수 및 관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 답변: 카메라 센서를 통해 미술관 관람객의 집계만 진행하였고, 별도의 관리는 없었음.
- 질의: 미술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방문자 관리를 진행 하기 바람.
- 답변: 그렇게 하겠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 석,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정준호,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시설의 방문객 및 이용객을 측정하는데 그 수치가 과다측정되는 등 부정확함. 시설 방문객 및 이용객 수치는 해당 시설의 주요 경영 및 성과평가 자료로 사용되기에 해당 시설들의 방문객 및 이용객 측정을 정확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시설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미술관 관람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u> <u>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u> <u>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u> <u>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u> <u>현황을 관리한다.</u>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를 신설하여 미술관 관람통계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통계관리에 따른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별도의 비용수반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내부적으로 관람객 통계를 관리(Ex. 인원측정 카운터기 활용 등)할 경우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향후 관람객 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유지 관리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스템 도입을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정책적 판단 등)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